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이태훈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4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4년 3월 6일

3. 개정이유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 공모전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행사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홍보물 등 기념품, 시상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 및 내용 신설(안 제23조)
-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 및 내용 신설(안 제24조)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 공모전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행사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홍보물 등 기념품, 시상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검토

○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조례안 제23조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조문으로 제1항에 예우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음.
- 예우 사항은 다음과 같음.

<p>제1호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제2호 충청북도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제3호 충청북도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제4호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 제2항은 예우대상, 기부증서 발급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제3항은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원 방안을 확보함.
- 또한 예우 사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설치·관리하는 ‘조령산휴양림’, ‘청남대’를 방문하는 고향사랑기부

금 기부자에게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을 위해 부칙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

- 입장료, 관람료 등 감면 내용

구분	감면 내용				
조령산 휴양림	[별표 2] 감면대상자에 고향사랑기부자 신설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수 기 주 중 에 한 함
	숲속의 집, 복합휴양관, 무궁화관	장애인	중증	요금의 50% 할인	
			경증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7급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30% 할인	
		병역명문가 가족		요금의 30% 할인	
		도민		요금의 20% 할인	
고향사랑 기부자		요금의 20% 할인			
도민대상 및 명예도민		요금의 50% 할인			
청남대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 할인				
	[별표1]				
	구 분	개 인	단 체 및 야간개장 (17:30이후)	비 고	
	어 른	6,000	5,000	19세 ~64세	
	청소년	4,000	3,000	13세 ~18세	
	어린이	3,000	2,000	7세 ~12세	
노 인	3,000	2,000	65세 이상		
군 인 등	4,000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급이 하사 이하인 군인 • 사회복지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조례안 제24조는 제1항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2항에서 홍보 행사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단 시상금(상품권 포함)의 경우 공모전 수상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과 홍보 행사, 공모전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 없음.
- 다만 효과성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정된 사항이 시행된 이후 기부자 예우 및 홍보 행사, 공모전 등의 운영 결과 분석,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붙임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